| 의안번호 | 제 216 호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 결 | 2015년 월 일 |
| 연 월 일 | (제 342 회) |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발 의 자 | 윤은희 의원 등 7인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15년 8월 24일 |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은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6 발의연월일 : 2015년 8월 24일

발 의 자 : 윤은희, 임회무, 엄재창

김영주, 연철흠, 최광옥,

이양섭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「지역문화진흥법」시행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재단 설립의 근거를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서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으로 변경(안 제1조)
- 재단의 목적사업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위탁 관광사업 수행 근거 마련(안 제5조)
- 재단 임원 정수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규정하고, 임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 하도록 함(안 제6조)

-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함(안 제7조)
-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, 결산서는 다음 해 3월말까지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(안 제12조, 제13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(안 제4조 등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제19조, 제22조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제18조, 제19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였음.
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:
 - 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충북문화재단"을 "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충북문화재단"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「민법」제32조 및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4조제2항" 을 "「민법」 제32조"로 한다.

제4조제7호 중 "임면"을 "임면(任免)"으로 한다.

- 제5조제3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"문화예술진흥"을 각각 "문화·예술·관광 진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7.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
- 제6조 중 "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"를 "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"로 하고, "정관으로"를 "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정관으로"로 한다.

- 제7조의 제목 중 "사무국"을 "사무처"로, 같은 조 제2항 중 "겸임토록"을 "겸임하게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9조 중 "운영"을 "재단의 운영"으로 한다.
- 제10조 중 "충북문화재단"을 "재단"으로, "얻어야"를 "받아야"로 한다.
- 제11조 중 "정부"를 "충청북도"로 한다.
- 제12조 중 "2개월"을 "1개월"로, "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"를 "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"로, "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"를 "때에도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"로 한다.
- 제13조제1항 중 "2월말"을 "3월말"로, 같은 조 제2항 중 "도민에게 공개한다"를 "공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- 제15조제2호 중 "허위"를 "거짓"으로 한다.
- 제16조 중 "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"을 "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| 위하여 <u>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</u> 제2항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을 설립 |
| | 제2조(법인격 및 명칭) ① 충북문화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 법인으로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|
|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 략) | 제4조(정관)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이사·감사의 <u>임면(任免)</u> 및 이 사회에 관한 사항 8. ~ 11. (현행과 같음) |
| 제5조(사업) (생 략) 1. ~ 2. (생 략) 3. <u>문화예술진흥</u> 을 위한 정책개발· 자문 및 교육·연구 사업 4. ~ 5. (생 략) 6. <u>문화예술진흥</u> 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 (신설) 7.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| 개발·자문 및 교육·연구 사업 4. ~ 5. (형행과 같음) |

제6조(임원 등) 재단의 임원은 이사 제6조(임원 등) 재단의 임원은 이사 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 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, 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. 임원의 정수,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임원의 정수,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을 준용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 제7조(사무국의 설치) ① 재단의 사 제7조(사무처의 설치) ① 재단의 사 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소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. 속 직원을 둘 수 있다. 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한다)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제9조(출연금 등) 도지사와 시장·군 제9조(출연금 등) 도지사와 시장·군 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 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를 지워할 수 있다. 제10조(정관의 변경 등) 정관의 변경 제10조(정관의 변경 등)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<u>충북</u>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<u>재단</u>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의 허 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가를 받아야 한다. 제11조(회계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제11조(회계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 충청북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12조(사업계획 승인 등) 재단은 매제12조(사업계획 승인 등) 재단은 매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 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 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도 하며, 이를 변경할 때에도 미리 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제13조(결산서 제출 등) ① 재단은 제13조(결산서 제출 등) ① 재단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.
-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 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<u>허</u> 위보고를 하였을 때
- 3. (생략)
- 제15조(재단에 대한 제재) (생 략) 제15조(재단에 대한 제재) (현행과 같음)
 - 1. (현행과 같음)
 - 2.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<u>거</u> 짓보고를 하였을 때
 - 3. (현행과 같음)
- 을 따른다.
- 제16조(준용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 제16조(준용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 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것은 「민법」 등 관계 법령과 정관 <u>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</u> 「민법」 등 관계 법령과 정관을 따른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역문화진흥법

- 제19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·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2조(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・관리한다.
- 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제16조(회계연도) 출자·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- 제18조(예산의 편성 등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 하고,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.
- 제19조(결산)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